

제320회 임시회
2013.5.15.(수)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5. 15 (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윤성옥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3년 4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5월 10일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성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용어정의 및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고시된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부부처의 고시내용에 따른 용어의 뜻 개정(안 제2조)
-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안 제27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나기성)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부처의 고시내용에 따른 용어의 뜻을 개정함은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과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와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또는 국내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9.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①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또는 국내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14. ~ 18. (생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 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 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 다. 이하같다)이 없는 기업이
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 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 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 설하는 경우
다. 국내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 시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에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 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 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 을 신·증설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p>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 수도권 신·증설 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제27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p>①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비 수도권 신·증설 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지식경제부</u>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 ----- -----. -----, <u>산업통상자원부</u> ----- -----.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제27조 관련)

구 분	대 상
	<p>◆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 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p> <p>*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 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p>
수 도 권	<p>◆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 일파동·이파동·삼파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p> <p>◆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 낙후지역” 은 제외</p>

관 계 법령

□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3 - 52 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은 내국인이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20. “집단화이전”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 또는 국내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단, 유치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수도권기업 이전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보조금 신청시 이전할 사업을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위(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가 3년 이상 변동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사정변경으로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것
2.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3. 비수도권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할 것
4.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별표 1]

수도권내 대상지역(제5조 2항 관련)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파동·이파동·삼파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 이므로 제외)

【참고자료】

1. 수도권이전기업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업체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4	28,131,000	18,746,900	3,712,510	5,671,590
2011년	8	10,568,000	6,766,800	1,694,040	2,107,160
2012년	6	17,563,000	11,980,100	2,018,470	3,564,430

2. 도내 투자기업(대규모투자)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업체수	계	도비	시군비
계	13	23,050,000	11,355,000	11,695,000
2011년	4	6,700,000	3,350,000	3,350,000
2012년	9	16,350,000	8,005,000	8,345,000